|  |  |  |
| --- | --- | --- |
|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1997년 7월 10일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1999년 8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반포, 2006년 2월 21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8년 1월 13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0년 12월 4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 제3차 개정)  **제1조** 법에 따라 가격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가격법이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가격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가격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을 결정한다.  **제3조** 가격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가격 불법행위 발생지의 지방 인민정부 가격주무부서가 결정하며, 국무원 가격주무부서가 그 상급 가격주무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법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적치상품 등 상품 이외에 경쟁대상자를 배척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를 하여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이익이나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가져다 준 경우  (2)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한 기타 경영자에 대해 가격차별 행위를 실시한 경우.  **제5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상품가격의 보다 큰 상승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사안에 비추어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상황 이외에 경영자가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기타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가져다 준 경우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계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경영자들로 하여금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게 한 경우 경영자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업계협회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가격의 과속, 과다 상승을 초래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가격상승 정보를 날조, 퍼뜨려 시장가격 질서를 교란한 경우  (2) 자가용 생산 이외에 정상적인 축적수량이나 축적 주기를 벗어나서 시장공급이 긴장하고 가격의 이상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대량으로 사장하여 가격주무부서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장한 경우  (3) 기타 수단으로 가격을 올려 상품가격의 과속, 과다 상승을 초래한 경우.  업계협회 또는 상품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가 전 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상기 규정 이외의 기타 단위가 허위 가격상승 정보를 퍼뜨려 시장가격 질서를 교란하여 법에 따라 기타 주관기관이 조사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가격주무부서는 그에 처벌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유관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7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적이거나 타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기타 경영자를 속여서 그와 거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수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상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조** 경영자가 정부지도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한다.  (1) 정부지도가격의 변동범위를 초과하여 가격을 제정한 경우  (2) 정부지도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정한 경우  (3) 제멋대로 정부지도가격, 정부의 가격 확정범위에 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제정한 경우  (4) 정부지도가격, 정부 확정가격의 집행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  (5）요금항목이나 요금기준을 스스로 정한 경우  (6) 요금항목을 분해하거나 비용을 중복 수취하거나 또는 요금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기준을 변상적으로 인상한 경우  (7) 정부가 명문으로 취소한 요금항목을 계속 유지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8)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 저당금 등의 형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수취한 경우  (9) 강제적으로 또는 변상적으로 강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10) 규정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을 수취한 경우  (11) 정부지도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10조** 경영자가 법정 가격 간여조치, 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한다.  (1) 가격인상 신고 또는 가격조정 등록 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한 가격차 비율, 이윤율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규정한 제한가격, 최저 보호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집중 정가권한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격 동결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정 가격 간여조치, 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11조** 이 규정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서 불법소득이 없는 개인 경영자의 가격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서 불법소득이 없는 개인 경영자의 가격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경영자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도모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3조** 경영자가 가격명시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한 내용과 방식대로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명시가격 이외에 가격을 올려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취한 경우  (4) 가격명시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4조** 가격 감독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율처분을 줄 수 있다.  **제15조** 정부 가격주무부서가 가격 감독검사를 실시 시에 발견한 경영자의 불법행위가 아래의 3가지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격법 제3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불법행위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하며, 조사 후 비교적 중한 처벌을 줄 수 있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3) 해당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타 조치를 취하여도 사실 규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가 가격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 집행인원이 2명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경영자 또는 유관인원에게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3조 규정중의 불법소득이 가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의 과다 지불대금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에게 기한부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대금을 과다 지불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방식을 취하여 찾도록 명령한다.  경영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과다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되어도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과다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는 이를 몰수하며,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7조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한다.  경영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  (1) 가격 불법행위가 중하거나 사회영향이 비교적 큰 경우  (2)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법을 어긴 경우  (3) 증거를 위조, 개찬하거나 또는 전이, 소각한 경우  (4) 가격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자금이나 상품을 전이한 경우  (5) 경영자가 이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나 기타 경영자의 과다 지불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가격 불법행위.  **제18조** 이 규정에서 불법소득에 따라 벌금액수를 계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소득이 없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이 규정에 열거한 가격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0조** 경영자가 정부 가격주무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야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기한이 경과하여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날마다 벌금액수의 3%를 가산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불법소득을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날마다 불법소득 액수의 0.2%를 가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단위나 개인이 이 규정에 열거한 가격 불법행위를 범하고 사안이 심각하지만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는 이외에 시정할 때까지 그 가격 불법행위를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관련 법률이 가격법 제14조에 열거한 처벌 및 처벌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가격 법 집행인원이 국가기밀, 경영자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25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  　　（1999年7月10日国务院批准　1999年8月1日国家发展计划委员会发布　根据2006年2月21日《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08年1月13日《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0年12月4日《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第三次修订）  **第一条**　为了依法惩处价格违法行为，维护正常的价格秩序，保护消费者和经营者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以下简称价格法）的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依法对价格活动进行监督检查，并决定对价格违法行为的行政处罚。  **第三条**　价格违法行为的行政处罚由价格违法行为发生地的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决定；国务院价格主管部门规定由其上级价格主管部门决定的，从其规定。  **第四条**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一）除依法降价处理鲜活商品、季节性商品、积压商品等商品外，为了排挤竞争对手或者独占市场，以低于成本的价格倾销，扰乱正常的生产经营秩序，损害国家利益或者其他经营者的合法权益的；  　　（二）提供相同商品或者服务，对具有同等交易条件的其他经营者实行价格歧视的。  **第五条**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造成商品价格较大幅度上涨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除前款规定情形外，经营者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合法权益的，依照本规定第四条的规定处罚。  　　行业协会或者其他单位组织经营者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的，对经营者依照前两款的规定处罚；对行业协会或者其他单位，可以处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依法撤销登记、吊销执照。  **第六条**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有下列推动商品价格过快、过高上涨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50万元以上3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一）捏造、散布涨价信息，扰乱市场价格秩序的；  　　（二）除生产自用外，超出正常的存储数量或者存储周期，大量囤积市场供应紧张、价格发生异常波动的商品，经价格主管部门告诫仍继续囤积的；  　　（三）利用其他手段哄抬价格，推动商品价格过快、过高上涨的。  　　行业协会或者为商品交易提供服务的单位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的，可以处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依法撤销登记、吊销执照。  　　前两款规定以外的其他单位散布虚假涨价信息，扰乱市场价格秩序，依法应当由其他主管机关查处的，价格主管部门可以提出依法处罚的建议，有关主管机关应当依法处罚。  **第七条**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利用虚假的或者使人误解的价格手段，诱骗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与其进行交易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第八条**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采取抬高等级或者压低等级等手段销售、收购商品或者提供服务，变相提高或者压低价格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第九条**　经营者不执行政府指导价、政府定价，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一）超出政府指导价浮动幅度制定价格的；  　　（二）高于或者低于政府定价制定价格的；  　　（三）擅自制定属于政府指导价、政府定价范围内的商品或者服务价格的；  　　（四）提前或者推迟执行政府指导价、政府定价的；  　　（五）自立收费项目或者自定标准收费的；  　　（六）采取分解收费项目、重复收费、扩大收费范围等方式变相提高收费标准的；  　　（七）对政府明令取消的收费项目继续收费的；  　　（八）违反规定以保证金、抵押金等形式变相收费的；  　　（九）强制或者变相强制服务并收费的；  　　（十）不按照规定提供服务而收取费用的；  　　（十一）不执行政府指导价、政府定价的其他行为。  **第十条**　经营者不执行法定的价格干预措施、紧急措施，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一）不执行提价申报或者调价备案制度的；  　　（二）超过规定的差价率、利润率幅度的；  　　（三）不执行规定的限价、最低保护价的；  　　（四）不执行集中定价权限措施的；  　　（五）不执行冻结价格措施的；  　　（六）不执行法定的价格干预措施、紧急措施的其他行为。  **第十一条**　本规定第四条、第七条至第九条规定中经营者为个人的，对其没有违法所得的价格违法行为，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  　　本规定第五条、第六条、第十条规定中经营者为个人的，对其没有违法所得的价格违法行为，按照前款规定处罚；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第十二条**　经营者违反法律、法规的规定牟取暴利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第十三条**　经营者违反明码标价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  　　（一）不标明价格的；  　　（二）不按照规定的内容和方式明码标价的；  　　（三）在标价之外加价出售商品或者收取未标明的费用的；  　　（四）违反明码标价规定的其他行为。  **第十四条**　拒绝提供价格监督检查所需资料或者提供虚假资料的，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  **第十五条**　政府价格主管部门进行价格监督检查时，发现经营者的违法行为同时具有下列三种情形的，可以依照价格法第三十四条第（三）项的规定责令其暂停相关营业：  　　（一）违法行为情节复杂或者情节严重，经查明后可能给予较重处罚的；  　　（二）不暂停相关营业，违法行为将继续的；  　　（三）不暂停相关营业，可能影响违法事实的认定，采取其他措施又不足以保证查明的。  　　政府价格主管部门进行价格监督检查时，执法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经营者或者有关人员出示证件。  **第十六条**　本规定第四条至第十三条规定中的违法所得，属于价格法第四十一条规定的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价款的，责令经营者限期退还。难以查找多付价款的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的，责令公告查找。  　　经营者拒不按照前款规定退还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的价款，以及期限届满没有退还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的价款，由政府价格主管部门予以没收，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要求退还时，由经营者依法承担民事责任。  **第十七条**　经营者有《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第二十七条所列情形的，应当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  　　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从重处罚：  　　（一）价格违法行为严重或者社会影响较大的；  　　（二）屡查屡犯的；  　　（三）伪造、涂改或者转移、销毁证据的；  　　（四）转移与价格违法行为有关的资金或者商品的；  　　（五）经营者拒不按照本规定第十六条第一款规定退还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价款的；  　　（六）应予从重处罚的其他价格违法行为。  **第十八条**　本规定中以违法所得计算罚款数额的，违法所得无法确定时，按照没有违法所得的规定处罚。  **第十九条**　有本规定所列价格违法行为严重扰乱市场秩序，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条**　经营者对政府价格主管部门作出的处罚决定不服的，应当先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二十一条**　逾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3%加处罚款；逾期不缴纳违法所得的，每日按违法所得数额的2‰加处罚款。  **第二十二条**　任何单位和个人有本规定所列价格违法行为，情节严重，拒不改正的，政府价格主管部门除依照本规定给予处罚外，可以公告其价格违法行为，直至其改正。  **第二十三条**　有关法律对价格法第十四条所列行为的处罚及处罚机关另有规定的，可以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第二十四条**　价格执法人员泄露国家秘密、经营者的商业秘密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二十五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